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2호 2020. 6. 1.(월)

공 고

-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5호선, 중로2-90호선, 소공원(154호))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 2
- 2020년 5월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4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20 - 867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5호선, 중로2-90호선, 소공원(154호))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1. 목포시 석현동 668-1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사업명 : 목포 석현동 제일풍경채 공동주택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열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2.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1.

목 포 시 장

■ 공시송달공고 내용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목포시 석현동 668-12번지 일원(구.중앙자동차학원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
- 사업명칭 : 목포 석현동 제일풍경채 공동주택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 개설 : 중로2-65호선 등 2개 노선 L=296.0m, B=15.0m

시 설 명	총 계 획	기 개 설	금회시행	비 고
중로2-65호선	L=405.0m, B=15.0m	L=296.0m, B=15.0m	L=109.0m, B=15.0m	
중로2-90호선	L=187.0m, B=15.0m	L=187.0m, B=10.0m	L=187.0m, B=15.0m	도로확장 개설

- 공원 조성 : 소공원(154호선) A=5,762.0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①목포시장
②(주)제이아이주택(대표이사:표용현)
- 주 소 : ①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②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11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2023. 2.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송달대상자)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성명	주 소	
1	석현동	669-36	임	1,609	1,609	김옥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45번길 19, 102동 204호(석현동,수창해뜨레)				중로 2-65

사. 열람·공고 기간 : 2020. 6. 1. ~ 2020. 6. 16.(15일간)

아. 열 략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자. 기 타 사 항 : 의견청취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고 제2020-892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별 첨
2. 주소 또는 거소 : 별 첨
3. 서류의 명칭 : 2020년 05월분 지방세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별 첨

가. 위의 서류를 2020년 6월 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및 영업소의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나. 관련 대상자께서는 납부기일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였으니 기간 내 목포시금고 또는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고 제 2020-894호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고 의무 설치 대상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가
- 제7조(명칭과 위치) 개정 : [별표 1] 자료 현행화
- 제8조(위탁운영)제7항 삭제 : 법률의 위임 없는 사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대상(법무혁신담당)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0. 6. 1. ~ 6. 22.(21일간)

9. 사전협의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2일까지 목포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다.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061-270-356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061-270-3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
셋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포미타운4단지 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립어린이집은 <u>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검토·감안하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u>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u>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⑥	제8조(위탁운영) ①~⑥

⑦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의 어린이 집만을 위탁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th>소 재 지</th></tr> </thead> <tbody> <tr> <td>예향어린이집</td><td>목포시 도룡길 51-1(석현동)</td></tr> <tr> <td>YWCA어린이집</td><td>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상동)</td></tr> <tr> <td>까리따스어린이집</td><td>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td></tr> <tr> <td>옥암주공2차 어린이집</td><td>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53(옥암동)</td></tr> <tr> <td>휴먼시아어린이집</td><td>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옥암동)</td></tr> <tr> <td>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td><td>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용해동)</td></tr> </tbody> </table>	명 칭	소 재 지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석현동)	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상동)	까리따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	옥암주공2차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53(옥암동)	휴먼시아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옥암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용해동)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th>소 재 지</th></tr> </thead> <tbody> <tr> <td>목포YWCA어린이집</td><td>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td></tr> <tr> <td>셋별어린이집</td><td>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td></tr> <tr> <td>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td><td>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td></tr> <tr> <td>예향어린이집</td><td>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td></tr> <tr> <td>카리타스어린이집</td><td>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td></tr> <tr> <td>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td><td>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td></tr> <tr> <td>행복주택어린이집</td><td>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td></tr> <tr> <td>현대어린이집</td><td>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td></tr> <tr> <td>휴먼시아 어린이집</td><td>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td></tr> </tbody> </table>	명 칭	소 재 지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	셋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
명 칭	소 재 지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석현동)																																		
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상동)																																		
까리따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																																		
옥암주공2차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53(옥암동)																																		
휴먼시아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옥암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용해동)																																		
명 칭	소 재 지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																																		
셋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4.]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